

(2) N-아세틸글루코사민, 식물스테롤, 식물스테롤에스테르, 식물스타놀에스테르 등 4종의 사용량 및 섭취량 제한을 통한 식품의 제한적 사용원료로 인정

라.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(부칙 제2조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「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 45호, 2009. 6. 30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면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「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품목 확대

(1) 면류 중 국수, 냉면, 당면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.

나.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(부칙 제2조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「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」 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 47호, 2009. 7. 3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19조 별표 8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정함으로써 영업자가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「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」을 제정고시 하였습니다.